

의안번호	2208551
의 퇴 인	박정현의원
회 답 일	2025.1.21.
추 계 번호	24D5400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6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48억 700만원(연평균 29억 6,100만원)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9조)	203	0	0	0	0	203	41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 (안 제14조)	2,377	2,377	2,377	2,377	2,377	11,885	2,377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19조)	2,020	0	233	233	233	2,719	544
추가재정소요	4,600	2,377	2,610	2,610	2,610	14,807	2,961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마을공동체계획의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8조(지역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시·군·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시·군·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마을공동체	의무규정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지역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3	안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4	안 제10조(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둠 －지역위원회는 주민등과 마을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5	안 제11조(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둠 －중앙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구와 마을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6	안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제9조의 기본계획 또는 제8조의 지역계획의 수립·변경과 중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개최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함	재량규정
7	안 제13조(마을공동체 지역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 수립의 지원·자문,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와 지원정책의 연구 및 분석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지원기관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역지원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지원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지역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재량규정
8	안 제14조(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분석, 전문인력·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이하 “중앙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지원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중앙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9	안 제15조(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의 활동 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운영비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재량규정
10	안 제16조(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제8조의 지역계획 및 제9조의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함 -국가는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17조(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의 학습 및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역량강화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재량규정
12	안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지역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19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마을공동체 관련 통계자료의 구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재량규정
14	안 제20조(마을공동체기금) 및 제21조(기금의 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역발전특별회계·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마을공동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할 수 있음 -기금은 마을공동체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함	재량규정

15	안 제23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금의 관리·운영·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16	안 제24조(민간 기금의 조성)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법인·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25조(마을 공동체재단)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재단을 설립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마을공동체재단의 설립·운영, 지원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재량규정
18	안 제26조(마을 공동체의 국유· 공유 재산 활용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27조(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날)	-국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을 지정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또는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재량·의무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마을공동체계획의 수립)	×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계획에 따라 수행할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모를 추정 곤란
2	안 제8조(지역계획의 수립)	×	지역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포함될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추정 곤란
3	안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	-
4	안 제10조(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의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모가 다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운영 방법 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합리적인 가정에 따른 추계가 곤란
5	안 제11조(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구성 등을 예측하기가 곤란
6	안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과 중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개최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존 부서와의 중복 여부, 전담부서의 정원확보 여부, 전담부서의 조직 구성 및 사업 규모 등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
7	안 제13조(마을공동체 지역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시행 등을 위해 지역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지역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지원기관의 규모·인건비·사업비 등을 예측하기가 곤란
8	안 제14조(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	○	-
9	안 제15조(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의 활동 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비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추정 곤란

10	안 제16조(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될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범위 및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1	안 제17조(마을공동체 역량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지원 범위 및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2	안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지역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전이므로 현시점에서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추정 곤란
13	안 제19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
14	안 제20조(마을공동체기금) 및 제21조(기금의 용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역발전특별회계·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조성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다만, 기금의 용도인 마을공동체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내용 및 범위 등을 현시점에서 추정 곤란
15	안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금의 관리·운영·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위원의 수, 회의 개최 횟수 등을 현시점에서 추정 곤란
16	안 제24조(민간기금의 조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법인·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감면을 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세제 감면의 대상·내용 및 범위 등을 추정 곤란
17	안 제25조(마을공동체재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나, 마을공동체재단의 설립·운영, 지원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등을 추정 곤란
18	안 제26조(마을공동체의 국유·공유 재산 활용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여부, 사용료 감면의 범위 등을 추정 곤란

19	안 제27조(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을 지정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또는 홍보 등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할 사업의 내용·범위 등을 추정 곤란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
 -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제정안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추계기간 중 2027년에 수립한다고 가정
- 안 제1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은 조직 및 사업 규모, 지원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확산을 위하여 위탁 운영중인 한국자원봉사센터 지원 예산을 준용함
- 안 제19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은 시스템의 구성 내용·사용 범위·장비 구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중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유지보수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11월 기준,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소비자물가상승률(CPI)	5.1	3.6	2.5	2.1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9조)

- 안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억 3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2021년~2023년의 기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²⁾(2억 300만원)을 적용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7년에 비용 발생

[표 2]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계획 수립(안 제9조)	203	0	0	0	0	2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안 제14조)

- 안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18억 8,500만원으로 추계됨
 - 행정안전부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³⁾ 운영 지원 예산의 최근 5년간 평균 금액인 2,377백만원을 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⁴⁾

2) 행정안전부의 2021년~2023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평균금액(자료: 행정안전부)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억원),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 6,000만원),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억원),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억 5,000만원)

3) 자원봉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해 2010.6. 최초 설치, 2020.1. 재단법인으로 재출범

4)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예산액	2,402	2,309	2,419	2,379	2,379	2,377

주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원봉사활성화지원(1141-302) 세부사업에 포함

2. 자원봉사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위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표 3]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 (안 제14조)	2,377	2,377	2,377	2,377	2,377	11,8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9조)

□ 안 제1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9억 5,200만원으로 추계됨

-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중인 기부통합관리시스템⁵⁾의 구축·유지보수 비용을 준용하고, 구축 비용은 2027년, 유지보수 비용은 2029~2031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1.1. 완료) 비용은 17억 400만원이 소요되었고, 최근 3년간 평균 유지보수 비용은 233백만원임⁶⁾
 - 개정안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유지보수 비용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의 연평균 금액이 2029~2031년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시스템 구축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⁷⁾이므로 유지보수 비용은 202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5)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정보, 기부금품 사용내역 등 기부통합대국민서비스 제공

6) 기부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운영관리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연평균
예산액	244	240	215	233

주 1. 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1135-500) 세부사업에 포함

2.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자료: 행정안전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7) 기획재정부의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52에 따르면 S/W의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하도록 함

[표 4]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19조)	2,020	0	233	233	233	2,7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6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48억 700만원(연평균 29억 6,100만원)이상으로 추계됨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9조)	203	0	0	0	0	203	41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 (안 제14조)	2,377	2,377	2,377	2,377	2,377	11,885	2,377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19조)	2,020	0	233	233	233	2,719	544
합 계	4,600	2,377	2,610	2,610	2,610	14,807	2,961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